

경북체육상 시상규정

제정 2016. 4. 1
경상북도 승인 2016. 4. 27
개정 2018. 2. 6

제1조(목적) 경상북도 체육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체육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의 명칭) 이 상의 명칭은 “경북최고체육상” (이하 “체육상” 이라 칭함)이라 칭한다.

제3조(시상부문) 경북최고체육상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.

- ①공로상
- ②지도상
- ③연구상
- ④최우수선수상
- ⑤최우수단체상
- ⑥신기록상(한국신기록 이상)

제4조(특별상) 경북체육발전에 협조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특별히 시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- 1. 모범경기단체상
- 2. 시·군지부상
- 3. 장한어버이상
- 4. 감사패
- 5. 표 창

제5조(추천기간) 체육상 수상후보자 추천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사정에 따라 본회에서 추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추천 및 심의) 체육상 및 특별상의 추천은 경상북도체육회장, 회원종목 단체장시·군체육회장, 경상북도교육감으로 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
제7조(공적산정기간 및 수상회수제한) ①수상후보자의 공적산정 기간은 추천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3년이상으로 하며, 1회 수상에 한 한다.

②신기록 상은 기록수립 당해연도에 한한다.

제8조(시상) ①체육상 수상자에게 패와 상금 또는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.

②특별상 수상자에게는 패(상장)와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.

③부상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9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2.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